

12.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0.4.21. 개정)(2021.6.22. 개정)

제2조 (조직 및 구성)

- ① 학생지원처 소속으로 한다. (2019.2.8.개정)
-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 교육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습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습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 관련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타 대학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수연구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8. 이러닝(교과·비교과 온라인 강좌 등 학습관리시스템 LMS)운영에 관한 사항(2017.02.03개정)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설치)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교무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9.2.8.개정)

- ② <삭제> (2019.2.8.개정)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2019.4.24.호 추가)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연간사업계획과 실적평가
-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④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